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7. 10. .
발 의 자	김태근 의원 외 13명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 연월일 2017. 10.

발 의 자 김태근, 김근아, 김복자,
김상조, 김인배, 김재상,
박교상, 박세진, 안장환,
안주찬, 윤종호, 정하영,
한성희, 허복(14명)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
2014.10.31.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2015년
~ 2018년도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
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
조정코자 함.

나.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
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
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,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를
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함.

※ 의정활동비 :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

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
지급하는 비용

※ 월 정 수 당 : 급여 성격

2. 주요내용

가.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

(의정활동비지급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
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(안 제2조의2 신설)

나.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(안 제3조)

- 현행 : 2,154,000원 ⇒ 개정 : 2,199,000원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의정활동비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
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
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
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,154,000원”을 “2,199,000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
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의정활동비 지급 제한)</u> <u>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</u> <u>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</u> <u>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</u> <u>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</u> <u>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</u> <u>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</u> <u>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</u>
제3조(월정수당지급) ①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<u>2,154,000원</u>을 지급한다. ② (생략)	제3조(월정수당지급) ①----- ----- ----- <u>2,199,000원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개정 조례안에 따라 예상되는 월정수당 인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, 구금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건은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(안 제2조의2, 제3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: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미 첨부

4. 작성자 :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양희규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- 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8., 2014.6.3.>

- 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- 2. ~ 3.(생략)
- ② (생략)

[별표 4]

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(제33조 관련)

구 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시·도 의 회 의 원	월 1,200,000원 이내	월 300,000원 이내
시·군·자치구의회 의원	월 900,000원 이내	월 200,000원 이내